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3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의자 : 이경숙, 박윤옥, 전해연,
김현택, 손정자, 한송연,
이진환, 박경원, 이상기

1. 제안 이유

남양주시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조성·관리, 참여지원 규정 (안 제4조~제6조)

다. 관리 우수 쌈지공원 선정, 쌈지공원 평가단 규정 (안 제7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관리하고, 지역공동체 활동 및 건전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쌈지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소규모 녹지공간을 말한다.
2. “공원시설물”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가. 화단·분수·조각·수목 등 조경시설물
 - 나.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
 - 다.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물
 - 라. 주민 문화·소통 활동을 위한 소규모 야외공간 등 교양시설물
 - 마. 소규모 운동기구 등 운동시설물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

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쌘지공원의 조성) ① 시장은 남양주시 생활권 내 유희지 및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쌘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쌘지공원 조성 시 안전성·접근성·주민 수요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쌘지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쌘지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마을공동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참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참여자를 지정할 경우 쌘지공원의 관리항목 및 관리세부 지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관리참여자는 이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쌘지공원 관리참여자에 대하여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쌘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참여자에게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관리 우수 쌘지공원 선정) ① 시장은 쌘지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관리 우수 쌘지공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 우수 쌘지공원에 표찰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관리 우수 쌘지공원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쌈지공원 평가단) ① 시장은 관리 우수 쌈지공원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쌈지공원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단원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도시·조경·문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자료 검토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단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른 쌈지공원 조성 및 동 조례 제6조 및 9조에 따른 관리참여자에게 경비 지원과 평가단 회의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2호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우리시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되어 반복적·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5년간 사업내역 : 쌈지공원 조성사업〉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100,000	80,000	100,000	150,000	100,000
도비(30%)	30,000	24,000	30,000	45,000	30,000
시비(70%)	70,000	56,000	70,000	105,000	70,000

- 본 조례(안) 제정으로 추가 조성될 신규사업의 대상지·규모·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제6조 쌈지공원 관리참여자에 대하여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전이므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제9조 평가단 회의에 참여한 위촉직 단원 수당 및 여비 지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
 - 위촉직 6명 × 100,000원 × 연 2회 : 1,200,000원

4. 작성자

환경국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 아.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